

#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73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3.  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조례상의 법령을 정비하고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장사등에관한 법령 정비(안 제1조)
- 나. 납골당사용료징수기준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자치법규 정비
-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## 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제7조제2항” 을 “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사용료및관리비” 를 “사용료” 로하고, 유연고유골 사용료 관외 “200,000” 을 “300,000” 으로 하며 무연고유골 사용료 관외 “150,000” 은 “225,000” 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사용료의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군민에 한함)
2.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<u>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공설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		제1조(목적) ..... ..... <u>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</u> ..... ..... .....						
제10조(사용료) ①연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유골의 봉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<u>사용료및관리비</u> 를 징수한후 유골을 봉안한다. (단위:원)					제10조(사용료) ① ..... ..... ..... <u>사용료</u> ..... ..... (단위:원)						
구 분	기 준	사 용 기 간	사 용 료		비 고	구 분	기 준	사 용 기 간	사 용 료		비 고
			관내	관외					군내 거주자	군의 거주자	
유연고 유골	1구당	15년 (15년단위로 연장가능)	100,000	<u>200,000</u>		유연고 유골	1구당	15년 (15년단위로 연장가능)	100,000	<u>300,000</u>	
무연고 유골	1구당	10년	75,000	<u>150,000</u>		무연고 유골	1구당	10년	75,000	<u>225,000</u>	
제11조(사용료의감면) <u>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용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 다. 1. <u>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자</u> 2. <u>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u>						제11조(사용료의감면)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 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군민에 한함)</u> 2. <u>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u>					